

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연결 모법인	①법 인 명			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		
	③대 표 자			④연 결 사 업 연 도	. . . ~ . . .	
	⑤소 재 지					
⑥법 인 구 분	연결집단 계	모법인	자법인	자법인	자법인(취득)	
⑦연 결 법 인 명						
⑧사 업 자 등 록 번 호						
⑨과 세 표 준						
⑩산 출 세 액						
(미납세액, 미납일수, 세율)		(, , 2.2/10,000)	(, , 2.2/10,000)	(, , 2.2/10,000)	(, , 2.2/10,000)	
⑪가 산 세 액						
⑫총 부 담 세 액						
⑬기 납 부 세 액						
⑭환 급 예 정 세 액						
⑮차 감 납 부 할 세 액						
⑯분 납 할 세 액						
⑰차 감 납 부 세 액						
⑱총 당 후 납 부 세 액						
⑲국세환급금 총당신청	환 급 법 인 세					
	총당할 농어촌특별세					

신고인은 「농어촌특별세법」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
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

신고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세무대리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1. ①법인명란, ②사업자등록번호란, ③대표자란 및 ⑤소재지란: 연결모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.
2. ④연결사업연도란: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.
3. ⑨과세표준란 및 ⑩산출세액란: "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연결집단)[별지 제76호의20서식]"의 ⑤소계란 중 ①과세표준란 및 ②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4. ⑫총부담세액란: ⑩산출세액란의 금액에 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4 및 제48조에 따른 가산세액(⑪)을 더하여 적습니다.
* 가산세액(⑪)은 미납세액에 가산세율(2.2/10,000을 적용하되,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/10,000을,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.5/10,000를 적용합니다)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.
5. 환급예정세액란: 「농어촌특별세법」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(=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등에 따른 감면세액 × 20%)을 납부한 이후 감면분 추가납부 등으로 환급이 예정되어 있는 농어촌특별세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.
6. ⑮분납할 세액란: 「농어촌특별세법」 제9조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.
7. ⑬총당 후 납부세액란: ⑮차감납부세액란의 금액에서 ⑮란 중 총당할 농어촌특별세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.
8. ⑲국세환급금 총당신청란: 법인세를 환급받는 연결집단이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 중 농어촌특별세에 총당하려는 금액(⑲총당할 농어촌특별세 ≤ ⑮차감납부세액)을 적습니다.